

「건설산업기본법」 위반 종합건설사업자 과태료 부과처분 공고

「건설산업기본법」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하고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5. 27.

경 상 북 도 지 사

1. 처분내용

업체명 (대표자)	업종 (등록번호)	소재지	처분사유	처분내용	처분근거
(주)에스앤지 건설 (이건호)	건축 공사업 (16-0439)	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전원4길 13	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9조의2 제2항 위반 (건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기재 사항 변경신청 지연)	과태료 (금120,000원)	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100조 제1호
(주)창신 종합건설 (김수영)	토목건축 공사업 (16-0209)	경상북도 영주시 대동로 63-1, 2층	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9조의2 제2항 위반 (건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기재 사항 변경신청 지연)	과태료 (금120,000원)	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100조 제1호

2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도시계획과(054-880-3916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